

대구직할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94. 7. 19

내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달서구청장
- 나. 제출일자 : 94. 7. 1
- 다. 회부일자 : 94. 7. 2
- 라. 상정일자 : 94. 7. 18

2. 제안설명요지(설명자 : 법무계장 서정율)

가. 제안이유

- “국가 소송사건수임변호사보수규정(법무부 훈령)” 및 “대구직할시법률고문운영규칙”이 개정됨에 따라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시와 균형을 유지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
-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여 행정의 낭비적 요소 제거
- 조리상 불합리한 내용 정비

나. 주요골자

- ▶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“1년”에서 “2년”으로 연장(안 제4조)
- ▶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지급규정 신설(안 제5조의 2)
- ▶ 소송비용지급기준 상향 조정(안 별표)
- 민사소송 착수금
 - 신청사건
 - 단 순 신 청 : 50,000원 ⇨ 100,000원 이내
 - 변론있는 신청 : 100,000원 ⇨ 150,000원 이내

• 본안사건(소송물가액 기준)

- 500만원미만 : 160,000원 ⇨ 250,000원 이내
- 500만원이상 - 1,000만원미만 : 250,000원 ⇨ 400,000원 이내
- 1,000만원이상 - 2,000만원미만 : 400,000원 ⇨ 600,000원 이내
- 2,000만원이상 - 5,000만원미만 : 800,000원 ⇨ 1,200,000원 이내
- 5,000만원이상 - 1억원미만 : 1,500,000원 ⇨ 2,000,000원 이내
- 1억원이상 - 2억원미만(신설) : 2,000,000원 ⇨ 2,500,000원 이내
- 2억원이상(신설) : 3,000,000원 이내

• 중요사건 : 1,000원 ⇨ 1,500천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백창기)

국가소송사건 수임 변호사 보수 규정 및 대구직할시 법률 고문 운영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시와 균형을 유지하며 현실에 맞도록 조항을 수정하고 조문은 이해 하기 쉽게 구체적 인 조항을 명시한 규정임으로 본 개정조례(안)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토론요지 : 없음

5. 수정안 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반대 : 없음

7. 첨부 : 대구직할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 1부

대구직할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 (안)

대구직할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중 “구를”을 “구 또는 구청장을”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임기)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고문변호사가 제3조제1항 각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수당) ①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수당은 매월말에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

제6조제1항중 “비용은” 다음에 “별표의”를 삽입한다.

[별표] 소송비용지급기준은 “별지”와 같이 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고문변호사는 재위촉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[別表]

소송비용지급기준

구분 소송별	지 급 기 준		
	내 용	착 수 금	승소사례금
민 사 소	1. 신청사건 • 단순신청 • 본안관련 신청 • 변론있는 신청	100,000원 이내 100,000원 이내 150,000원 이내	없 음
	2. 본안사건(소송물가액 기준) • 500만원미만 • 500만원이상 1,000만원미만 • 1,000만원이상 2,000만원미만 • 2,000만원이상 5,000만원미만 • 5,000만원이상 1억원미만 • 1억원이상 2억원미만 • 2억원이상	250,000원 이내 400,000원 이내 600,000원 이내 1,200,000원 이내 2,000,000원 이내 2,500,000원 이내 3,000,000원 이내	60%이상 승소확정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 비율을 곱한 금액
송	3. 중요사건(승패에 따라 당시의 행· 재정상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건)	1,500,000원 이내	"
	4. 상고심	본안사건 착수금의 1/2이내	"
	5. 환송심	본안사건의 착수금의 1/2이내	"

구분 소송별	지 급 기 준		
	내 용	착 수 금	승 소 사 례 금
행 정 소 송	1. 신청사건	민사소송에 준함	없 음
	2. 본안사건 • 소송물가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• 소송물가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	민사소송에 준함 400,000원 이내	민사소송과 동일
	3. 중요사건 (민사소송에 같음)	1,500,000원 이내	"
	4. 상고심	400,000원 이내	"
	5. 환송심	본안사건 착수금의 1/2이내	"
기 타	1. 인지대 2. 송달료 3. 검증비 4. 감정료 5. 출장비 및 여비 6. 복사료등 기타 경비	실 액 실 액 실액 (다만, 현장검증때 소송대리인이 수행할 경우에는 30,000원을 별도 지급) 실 액 "대구직할시달서구 지방공무원여비조례" 중 4급공무원 해당액 실 액	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(안)
<p>제3조(직무)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입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~4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4조(임기) <u>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</p> <p>제6조(소송비용등) ① 고문변호사가 수입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<신설> <u>소송비용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(직무) ①</p> <p>....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구 또는 구청장을</u>.....</p> <p>.....</p> <p>3~4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임기) <u>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고문변호사가 제3조제1항 각 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5조의2(수당) ① <u>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<u>수당은 매월말에 지급한다. 다만,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.</u></p> <p>제6조(소송비용등) ①</p> <p>.....<u>별표의</u>.....</p> <p>....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		